

최종원고

Post-농업협상 대비 강원도  
농업 정책 대응 방안 분석  
조사용역

이 상 현	연구 책임자
홍 성 민	연구 보조원

강원대학교

## 제 출 문

---

강원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Post-농업협상 대비 강원도 농업 정책 대응 방안  
분석 조사용역」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7월

주관연구기관명: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 상 현(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 홍 성 민(연구보조원)

# 차 례

---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2

## 제2장 현재 적용중인 개도국 우대조항 관련 분석

- 1. 개도국 지위 관련 배경 및 추진경과 .....3
- 2. WTO 농업협정상 개도국 우대조항 및 적용 현황 .....6

## 제3장 Post-농업협상 강원도 농업 파급 효과 시나리오 분석

- 1. 향후 농업 협상 전망 .....11
- 2. 시나리오 설정 .....14
- 3. 분석 결과 .....26

## 제4장 통상법상 허용보조 검토

- 1. WTO보조금협정의 기본구조 및 적용순서 .....33
- 1. WTO 허용 보조 기준 .....39
- 2. 선진국 사례 .....41

## 제5장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농업정책 발굴

- 1. 강원도 농업정책 현황 .....49
- 2.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농업정책 방향 .....53
- 3. 신규 농업정책 발굴 (상향식 지속가능 농업농촌지원 정책) .....56

## 참고문헌

- .....66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 2008년도 이후 그동안 WTO는 회원국내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특히 선진국들은 일부 회원국들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TO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불만을 표출함.
- 많은 선진국들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각 국의 선언에 따라 개도국 지위가 부여되었는데, 국가별 경제상황이 많이 변화한 상태에서 20여 년 전의 선언이 과연 적합한가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함.
- 미국은 무역 적자 원인이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때문이라고 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한 통상외교를 앞세워 중국과 통상마찰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됨. 그리고 중국의 개도국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WTO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됨.
- 미국은 현재 또는 미래의 WTO 협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국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음.
- 결국 브라질, 싱가포르, 대만, 아랍에미리트(UAE)가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9년 10월 25일 제208차 대외경

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미래 WTO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음.

-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조항을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농업 분야에 대한 개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우대조항을 주장하지 않을 시에 대한 농업 협상 내용을 예상해보고, 이에 따른 강원도 농업에의 파급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향후 농업 협상에 대비하여 강원도 농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래 WTO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강원도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강원도 농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적용중인 개도국 우대조항 관련 분석
  - Post-농업협상 강원도 농업 파급 효과 시나리오 분석
  - 통상법상 허용보조 검토
  -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농업정책 발굴

## 제 2 장

### 현재 적용중인 개도국 우대조항 관련 분석

#### 1. 개도국 지위 관련 배경 및 추진경과

- 2008년도 이후 소강상태였던 DDA 협상은 2013년 말 제 9차 WTO 각료회의와 2015년 말 제 10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일부 조기 수확 이후로 다시 정체되었음.
  - 2015년 12월 나이로비 10차 각료회의 이전부터 미국은 일부 쟁점이 적은 분야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 최빈개도국을 위한 특별 대우, 투명성 강화 등)만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타결하고, DDA 협상은 종료하자고 주장하였음.
  - 반면, 개도국들은 DDA 협상을 계속하여야 하며 DDA 협상이 개발을 주제로 출발한 만큼, 개도국들을 위한 확실한 특별대우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음.
- 결국 2017년 12월 제11차 부에노스아이레스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은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이에 미국은 WTO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한 통상외교를 앞세워 2018년에는 중국과 통상마찰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그 밖에 많은 국가들에게 강력한 통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후보 시절부터 WTO에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WTO에서 탈퇴할 수도 있음을 공언하였음.

- 지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KORUS FTA 재협상, NAFTA 재협상, 중국과의 통상 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되는 미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지켜 봐 온 선진국들은 미국의 WTO 탈퇴 역시 실현될 수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이전과 다른 위기의식을 갖게 됨.
  - 예전에도 WTO 개혁 논의가 제기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번의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강경한 미 행정부의 입장으로 인하여 예전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음.
  - 대미 교역 비중이 높은 많은 선진국들은 WTO에서 미국이 탈퇴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는 바, 미국이 WTO 체제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움직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 2018년 12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WTO의 개혁을 지지하고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2019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국제기구 개혁을 촉구하게 되었음.
  - 2018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EU가 주도한 개선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미국은 본 개선안이 자국의 입장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음.
  - 이번 개혁의 핵심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분쟁해결제도 개혁, 신무역규범 제정, 개도국 세분화, 복수국 간 협상방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지적권 침해 등을 규제하는 것이 미국의 최대 관심사임.
  
- 미국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네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들에게 더 이상 개도국 우대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음.
  - OECD 회원국 또는 OECD 가입 절차를 시작한 WTO 회원국
  - G20 회원국인 WTO 회원국
  - World Bank가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WTO 회원국
  - 세계 상품 교역(수출입)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WTO 회원국



표 2-1. 미국의 기준에 의한 국가 분류

구분	OECD 회원국 (7)	G20 국가 (10)	고소득국가 (22)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17)
4가지 기준 충족 (1)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3가지 기준 충족 (3)	터키, 멕시코	터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멕시코, 사 우디아라비아
2가지 기준 충족 (12)	칠레, 이스라엘,	중국, 인도네시 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 아공	칠레,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싱 가포르, UAE, 홍콩, 대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 라질, 남아공, 싱가포 르, UAE, 홍콩, 대 만
1가지 기준 충족 (19)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안티구아, 바레 인, 바베이도스, 오 만, 브루나이, 쿠 웨이트, 마카오, 파나마, 푸에르 토리코, 트리니 다드 토바고, 카 타르, 세이셸, 우 루과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 시아

주: ( ) 안은 해당 국가의 수.

자료: 서진교 외, 최근 WTO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19.

-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는 향후 보조금 및 관세 감축의 기준이 변경되는 민감한 사안임.

-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으나,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및 이행 기간 등에서 개도국 조건 유지해 왔음.

- 하지만 1995년 당시부터 한국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으며, 일반특혜관세(GSP) 수혜 종료, 국민소득 3만불 달성, OECD 가입 등 1995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수준 향상하고 농업관련 경제지표<sup>1)</sup>들도 OECD평균 수

1) 총 인구대비 농업인구(%) : ('98) 9.5 → ('18) 4.5 (OECD 평균 4.6)

GDP 중 농림업 비중(%) : ('98) 4.6 → ('18) 1.8 (OECD 평균 1.5%)

준으로 개도국 주장에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음.

- 한국은 미국·EU·호주 등 농업선진국과 FTA를 체결하여 높은 수준으로 시장 개방하였고 최근 대내외 상황이 변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에도 개도국 특혜를 지속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WTO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함.
- 국제 여건 상 개도국 특혜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직접 이해 관계자인 농업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양해,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개도국 지위 관련 선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매우 크며, 미래 WTO협상 이전에 하루속히 농업부문의 역량 강화와 소득안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2. WTO 농업협정상 개도국 우대조항 및 적용 현황

### 2.1. 국내보조

- WTO 농업협정상 개도국 우대조항을 살펴보면,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감축에 있어서 개도국 우대조항이 있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에 따라 선진국은 Base Total AMS의 20%를 1995년부터 6년간, 개도국은 13.3%를 1995년부터 10년간 감축해 최종한도를 결정하였음.
  -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 왜곡 보조금의 총계임.
  - 우리나라는 1989~1991년간 평균 AMS 총액인 1조 7,186억 원을 2004년까지 10년간 13.3% 감축해 최종 1조 4,900억 원을 양허함.

- 현재도 DDA 협상에서 AMS의 구간별 감축, 품목AMS 상한, OTDS도입 등 논의 중에 있으나 합의 도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 제6조 4항(b)에 의해 개도국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상한이 총 생산액의 10%까지(선진국 5%) 인정되었음.
  - 농업협정 6조 4항은 품목특정보조의 경우 기초농산물의 총생산가의 5%, 품목불특정보조의 경우 총농업생산가의 5%를 넘지 않는 보조는 AMS에 산입·감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단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항에 따른 미소보조 비율을 10%로 함을 명시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쌀소득보전직불제 하에서는 쌀 직불이 생산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AMS의 대부분을 쌀이 소모하게 되어 DM 감축에 민감하였으나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한 이후 공익형직불제를 허용보조로 통보하면서 DM 감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음.

표 2-1. 개도국 우대 조항 - 국내 보조 I

일반규정	선진국 규정	개도국 규정	비고
①감축률	①20%	①13.3%(선진국의 2/3이상)	개도국의 이행과 정책수단의 활용범위에 신축성 부여
②이행기간	②1995~2000(6년간)	②1995~2004(10년간)	
③최소허용보조(De Minimis)	③5%	③10%	

-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투자 및 투입재 보조에 관하여서도 개도국 우대조항이 있으며,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AOA) 제6조 2항에 의해 개발도상국의 (i)투자보조 및 (ii)농업 투입재 보조, (iii)마약작물 재배전환 보조는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산림청의 양묘기반조성 투자보조를 지급하고 있으며, 투입재보조는 2008년 이후(포장재 지원 보조) 지급 내역이 없음.

표 2-2. 개도국 우대 조항 - 국내 보조 II

일반규정	선진국 규정	개도국 규정	비고
농업협정 제6조(개도국 조항)		국내보조 허용대상정책범위 확대 → 일반투자·영세농보조· 투입재보조 등 허용	

## 2.2. 시장접근

- 농업협정을 통하여 회원국들은 예외 없는 관세화와 관세인하를 약속하였고, 이에 개도국들은 기준년도 3년의 관세상당치를 10년에 걸쳐(선진국 5년) 인하하였으며 선진국 대비 2/3의 감축률을 적용받았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평균 감축률 24%(선진국 36%), 최소 감축률 10%(선진국 15%) 적용받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를 감축하였음.
  - 우리나라는 부속서 5의 특별대우에 따라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으나, 2015년 513% 관세율로 쌀에 대해서도 관세화를 단행함.

표 2-3. 개도국 우대 조항 - 시장접근

일반규정	선진국 규정	개도국 규정	비고
관세 및 관세상당치(TE) 감축 ①감축률 ②이행기간	①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②1995~2000(6년간)	①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②1995~2004(10년간)	

### 2.3. 수출경쟁

-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일부 의제 중 견해차가 크지 않은 수출경쟁 분야가 타결됨. 농업협정 제9.4조에서 개도국 수출물류비 지원은 2023년(2018년+5년)까지 철폐하기로 하였고,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과 식량순수입개도국(Net Food - 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NFIDC)은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함.
  - 선진국의 경우 수출보조에 대하여 즉시철폐를 합의하였음. 다만 가공품, 낙농품, 돼지고기에 대한 모든 수출보조금은 2003~05년 기준연도의 평균 물량수준으로 2020년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LDC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출보조는 2016년부터 철폐하기로 함.
  - 또한 수출보조금의 우회적인 지급이 불가하고, 품목별로 이행 기간 동안 지난 5년간 지급된 수출보조금 평균을 넘지 말아야 함. 또한 회원국들은 무역왜곡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출보조금 지급에 따른 다른 회원국의 수출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시장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을 적용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로비 합의 내용 중 수출금융과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 원조 분야에 영향을 받지 않음. 반면, 개도국의 수출물류비 보조 철폐에는 해당되어 2023년까지 수출물류비를 철폐하여야 함.
  - 본 결정은 과거 합의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개도국 규정에 따르면 됨.

표 2-3. 개도국 우대 조항 - 수출경쟁

일반규정	선진국 규정	개도국 규정	비고
수출보조금 감축 ①감축률 ②이행기간	①재정금액 36%, 보조수출물량 21% ②1995~2000(6년간)	수출보조 감축대상 유형의 축소 → 국내수송비, 유통비용 지원 허용 ②1995~2004(10년간)	최빈국은 모든 감축의무 면제

표 2-4. 나이로비 패키지 수출경쟁분야 내용

분야	주요내용
수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은 수출보조 즉시 철폐</li> <li>- 개도국은 2018년까지 철폐</li> <li>- 농업협정 제 9.4조에 따르면 물류비 관련 개도국 수출보조는 2023년까지 철폐</li> </ul>
수출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최대상환기간은 18개월로 규정하였고, 2017년 말부터 적용</li> <li>- 개도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4년의 단계적 이행 기간을 부여</li> </ul>
수출국 영 무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점력으로 인한 무역왜곡 효과를 최소화하고, 타 국가의 수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에 합의</li> </ul>
식량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과 배급 시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금화를 허용</li> <li>- 수혜국의 정부에서 현금화된 식량원조 활용의 여부에 대해 결정 가능하다는 내용 추가</li> </ul>

자료 : 이상현·안수정(2016) “수출경쟁분야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와 시사점”

## 제 3 장

### Post-농업협상 강원도 농업 파급 효과 시나리오 분석

#### 1. 향후 농업 협상 전망

##### 1.1. 국내보조 분야

- 향후 농업협상이 DDA 농업협상 수정안(Rev.4)과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분석을 시행하였음. DDA 농업협상 수정안(Rev.4)은 국내보조 분야의 감축대상 보조(AMS), 최소허용보조(DM), 블루박스(Blue Box)에 대한 감축규율을 강화하였음. 그리고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을 감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DDA 수정안(Rev.4)의 국내보조 분야 내용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갖는 다는 가정을 하고 검토하였음.
- 최소허용보조는 AMS와 동일한 성격이나, 보조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임. 최소허용보조는 특정품목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와 불특정품목에 지원하는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로 구별됨. 현재 우리나라의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는 우루과이 라운드 최소허용보조인 품목 생산액의 10%(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10%)를 유지하고 있음.
  - 추후 우리나라가 WTO에서 선진국 지위로 분류될 경우 우리나라의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는 이행 첫날 품목 생산액의 5%(품목불특정은 농업총생산액의 5%) 수준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음.
  - 1995~2011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급한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 대비 0.3~1.7%로 낮은 수준임. 따라서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한도의 감축이 우리나라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AMS는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상이 제시한 한도 내로 지급하되, 협상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보조임. 우리나라의 최종 양허된 우루과이 라운드 총AMS 한도는 1조 4,900억 원임.
  - 추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가질 경우 우리나라의 총AMS 한도는 이행기간 5년 동안 감축되어 8,195억 원이 될 수 있음. 또한 총AMS 한도뿐만 아니라 품목특정 AMS 한도를 설정하여 AMS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그러나 공익형직불제의 시행으로 쌀에 AMS 지급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본 AMS 한도의 감축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블루박스의 경우, 총 블루박스과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한도를 설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나 WTO 통보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블루박스를 지급한 실적이 없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블루박스를 지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 설정(AMS지급 실적이 없는 품목만 해당)이나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품목특정 블루박스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총 블루박스 한도는 추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가질 경우 7,67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블루박스를 지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블루박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최종 양허된 총AMS와 최소허용보조 그리고 블루박스의 합을 무역왜곡보조총액으로 정의하고 이를 감축하도록 할 수도 있음.
  - 추후 선진국 지위를 우리나라가 적용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기준은 6조 926억 원이 되며, 우리나라는 이행기간 5년 동안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기준인 6조 926억 원이 2조 7,417억 원이 되도록 감축해야 함.
  - 하지만 1995~2011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지급했던 감축보조는 1997년에 지급되었던 2조 5,922억 원인데, 이는 선진국 지위 시 최종 무역왜곡보조총액 한도(2조 7,417억 원)보다도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감축이행이 우리나라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1.2. 시장접근 분야

-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에도 불구하고 농업 수출국들은 농산물 수입국들이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품목들을 현행 관세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관세율이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품목일수록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련 세번은 HSK 기준 총 1,622개인데, 630개 세 번은 0~20%에 해당되고, 586개 세번은 20~50%, 174개 세번은 50~75%, 197개 세번은 75%~에 해당됨. 우리나라의 주요품목 중 식량작물, 조미채소, 유지작물, 그리고 인삼과 관련된 대부분의 세번들은 관세가 75%보다 높아 높은 관세감축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전체 세번의 일정 %안에서 지정한 민감품목에 대해 앞의 일반 관세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대신 TRQ를 증량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는데 추후 우리나라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번수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상현 외(2016)의 연구에서 민감품목 우선순위를 참고하면, 추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가질 경우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민감품목은 쌀뿐임. 단, 쌀 다음순위로 낙농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닭고기, 고추, 딸기, 그리고 사과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쌀 관련 16개 세 번의 현행 양허관세는 513%로 매우 높은 관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세번들의 소비량 대비 현행 TRQ 물량비중은 10.62%로 10% 이상임. 따라서 추후 우리나라가 이 1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은 국내 소비량 대비 TRQ 물량비중을 상당 수준 증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2. 시나리오 설정

### 2.1. 관세감축 수준

- 향후 농업협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DDA 협상에서 논의되어 오던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보조 부분은 국내 농업 부분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접근 분야에서 높은 관세감축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
- 다만 미래 농업협상에서 관세 감축률이 어떤 수준으로 설정이 될지는 알 수 없음.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료는 DDA 수정안(Rev.4)에서 제시된 관세감축 이행 스케줄임.
  - 따라서 본 연구는 DDA 수정안(Rev.4)에서 제시된 관세감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함.
- DDA 수정안(Rev.4)에서 제시된 관세감축 이행 스케줄을 고려한 강원도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협상이 발효되면 개방 수준이 연차별로 확대된다고 가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 시나리오별 대상 품목은 국내 수입량이 집계되는 품목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음. 2015년 관세화를 하였지만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쌀과 SPS 등 규제로 인한 국내 수입금지 품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대추, 밤, 잣, 표고버섯 등 임산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DDA 수정안(Rev.4)에서 제시된 관세감축의 농업부문 파급영향분석을 위해 기준(Baseline) 시나리오와 선진국 지위(※본 연구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진국 지위로 적용받는 것으로 간주하였음)에 따른 관세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 기준(Baseline) 시나리오는 현행 관세수준이 관세감축 없이 이후에도 계속 같

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상정함.

표 3-1. DDA 관세감축률

구분	선진국	
이행기간	5년(6단계로 감축)	
구간	현행 관세수준	감축률
1구간	0% < 양허관세 ≤ 20%	50%
2구간	20% < 양허관세 ≤ 50%	57%
3구간	50% < 양허관세 ≤ 75%	64%
4구간	75% < 양허관세	70%

- 품목별 관세감축 시나리오는 DDA 수정안(Rev.4)에서 제시된 표 4-1을 준용하여 표 4-2와 같이 설정함. 해당 품목의 현행 관세수준에 따라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더 많은 감축률을 적용하고 있음.
- 시나리오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현행 관세수준에서 5년간 품목별·구간별·단계별 감축하였을 때로 상정함.

표 3-2. WTO DDA 관세감축 시나리오 설정

품목명	현행 양허관세	시나리오 (선진국 지위)	
		구간	감축률(5년)
감자	304.0	4구간	70.0%
고구마	385.0	4구간	70.0%
녹두	607.5	4구간	70.0%
대두	487.0	4구간	70.0%
보리	513.0	4구간	70.0%
팥	420.8	4구간	70.0%
오이	27.0	2구간	57.0%
토마토	45.0	2구간	57.0%
호박	27.0	2구간	57.0%
고추	건고추	4구간	70.0%
	냉동고추	2구간	57.0%

품목명	현행 양허관세	시나리오 (선진국 지위)	
		구간	감축률(5년)
마늘	360.0	4구간	70.0%
생강	377.3	4구간	70.0%
양파	135.0	4구간	70.0%
딸기	45.0	2구간	57.0%
수박	45.0	2구간	57.0%
포도	45.0	2구간	57.0%
참깨	630.0	4구간	70.0%
땅콩	230.5	4구간	70.0%
인삼	754.3	4구간	70.0%
화훼	22.0	2구간	57.0%
녹차	513.6	4구간	70.0%
탈지분유	176.0	4구간	70.0%
닭고기	20.0	1구간	50.0%
돼지고기	22.5	2구간	57.0%
쇠고기	40.0	2구간	57.0%
연유	89.0	4구간	70.0%
전지분유	176.0	4구간	70.0%
천연꿀	243.0	4구간	70.0%
치즈	36.0	2구간	57.0%
버터	89.0	4구간	70.0%
오렌지	50.0	2구간	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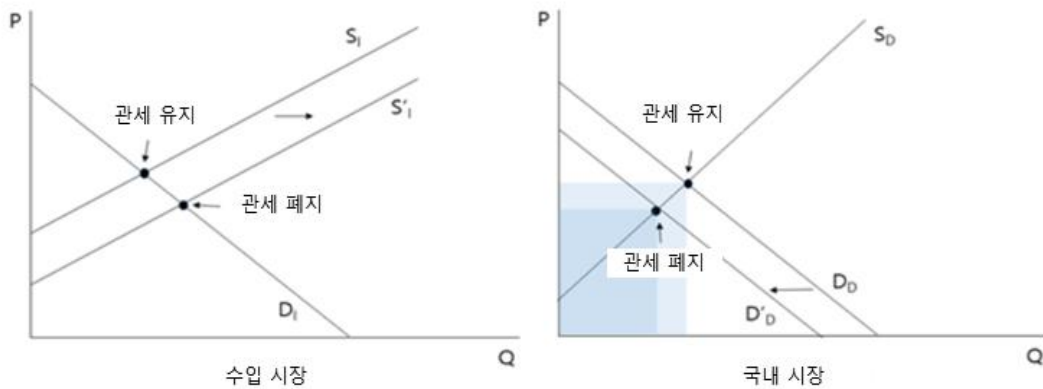
## 2.2. 파급영향 분석 이론적 배경

- WTO DDA 관세감축이 강원도 농업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Baseline) 시나리오와 관세감축 시나리오의 생산액 변화(피해액)로 정의하였으며, 향후 15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음.

$$\text{생산액 피해액} = \text{베이스라인 생산액 전망치} - \text{관세감축 시나리오 전망치}$$

-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량 증가는 초과공급으로 전환되고, 국내 균형가격은 하락하며, 가격하락은 동기 및 차기의 생산량을 감소시킴.
  - 국내 균형가격 하락폭( $\Delta P$ )과 국내 생산량 감소폭( $\Delta Q$ )의 곱이 국내 생산액 피해로 도출됨.
  - 국내 품목별 전체 생산량 대비 품목별 강원도 생산량의 비중을 계산하여 앞서 도출된 국내 생산액 피해액에 곱하여 강원도 생산액 피해액을 산출함.
- 관세를 폐지 또는 감축할 경우, 수입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으며( $S \rightarrow S'$ ),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량이 증가하게 됨. 수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농산물의 전체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국내 가격이 하락하게 됨. 하락한 국내가격에 따라 국내 생산량과 국내 생산액도 감소하게 됨( $D \rightarrow D'$ ).

그림 3-1. 관세 폐지 이론적 배경



### 2.3. 산출식 도출

- 관세 감축 및 철폐에 따른 국내 농업 부분의 파급영향 분석은 수입산과 국내산을 동질적으로 고려하는 지, 이질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따라 다름. 전자의 경우, 수입량 변화를 국내 수급 모형에 반영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국내산 수요함수에 수입산 가격을 직접 반영해야 함. 농산물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의 상품간의 이질

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 수입량 변화를 국내 수급에 고려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음.

- 종가 관세( $t$ )의 변화는 수입단가 곱하여 적용되며, 이는 수입가격( $P_M$ )의 변화임.

$$P_W \times \Delta t = \Delta P_M$$

- 종량 관세( $t$ )의 변화는 곧 수입가격( $P_M$ )의 변화를 의미함.

$$\Delta t = \Delta P_M$$

- 수입가격( $P_M$ )이 변화하면 수입량( $I$ )이 변화됨.

$$\Delta I = \frac{\partial I}{\partial P_M} \times \Delta P_M$$

- 수입량( $I$ )이 변화하면 국내 총 공급량( $S_T$ )이 변화됨.

$$\Delta I = \Delta S_T$$

- 국내 총 공급량( $S_T$ )이 변화되면 국내 가격( $P_D$ )이 변동됨.

$$\Delta P_D = \frac{\partial P_D}{\partial S_T} \times \Delta S_T$$

- 국내 가격( $P_D$ )이 변화되면 국내 가격( $S_D$ )이 변동됨.

$$\Delta S_D = \frac{\partial S_D}{\partial P_D} \times \Delta P_D$$

- 따라서 종가세 변화에 따른 생산액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측될 수 있음.

$$\begin{aligned} \Delta V = & (S_D + (\frac{\partial S_D}{\partial P_D} \times \frac{\partial P_D}{\partial S_T} \times \frac{\partial I}{\partial P_M} \times (P_W \times \Delta t))) \\ & \times (P_D + (\frac{\partial P_D}{\partial S_T} \times \frac{\partial I}{\partial P_M} \times (P_W \times \Delta t))) - (S_D \times P_D) \end{aligned}$$

- 한편 종량세 변화에 따른 생산액 변화는 다음과 같이 예측될 수 있음.

$$\Delta V = (S_D + (\frac{\partial S_D}{\partial P_D} \times \frac{\partial P_D}{\partial S_T} \times \frac{\partial I}{\partial P_M} \times \Delta t)) \times (P_D + (\frac{\partial P_D}{\partial S_T} \times \frac{\partial I}{\partial P_M} \times \Delta t)) - (S_D \times P_D)$$

- 국내 생산 피해액( $\Delta V$ )을 도출한 다음, 여기에 국내 품목별 전체 생산량( $S_T$ ) 대비 품목별 강원도 생산량( $S_G$ )의 비중을 곱하여 강원도 생산 피해액( $\Delta S_G$ )을 산출함.

$$\Delta V_G = \Delta V \times \frac{S_G}{S_T}, \frac{\partial P_D}{\partial S_T}, \frac{\partial I}{\partial P_M}$$

- 관세감축에 의한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관세 변화와 이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량 증가,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생산량 감소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량 변화, 전체 공급량 변화에 따른 국내 가격 변화, 수입가격과 변화에 따른 수입량 변화 등의 관계를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frac{\partial S_D}{\partial P_D}, \frac{\partial P_D}{\partial S_T}, \frac{\partial I}{\partial P_M}$$

- 본 분석에서는 수입 증감과 국내산 공급 증감은 가격에 대한 한계효과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변화하지만 소비에 있어서는 수입산과 국내산 간 경합관계를 가정함.
- 국내 농산물 시장 수급을 살펴보기 위한 국내공급함수, 수입수요함수, 수출공급함수, 역수요함수, 가격연결함수는 다음과 같음.

$$\text{국내생산량} = f(\text{생산자가격}, \text{전기생산량})$$

- 국내생산량은 국내 농산물 생산자가격이 상승할 때 증가하며, 전기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함.

$$\text{수입량} = f(\text{수입가격}, \text{소비자가격}, \text{국민총가처분가능소득})$$

- 수입량은 관세 감축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할 때 증가하며, 국내 소비자가격이 상승할 때 증가하며, 국민총가처분소득이 높아지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text{수출량} = f(\text{수출가격}, \text{국내가격})$$

- 수출량은 수출가격이 상승하면 수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량이 감소하며,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시장 출하 증가로 수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text{소비자가격} = f(\text{국내 소비량})$$

- 역수요함수에서 소비자가격은 국내 소비량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함.

$$\text{생산자가격} = f(\text{소비자가격})$$

- 생산자가격은 소비자 가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함.

#### 2.4. 품목별 국내 전체 생산량 대비 강원도 생산량 비중

- 관세 감축 및 철폐에 따른 강원도 농업 부분의 과급영향 분석은 우선 농업협상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생산 피해액을 도출한 다음, 여기에 국내 품목별 전체 생산량 대비 품목별 강원도 생산량의 비중을 곱하여 강원도 생산 피해액을 산출함.
- 품목별 국내 전체 생산량의 경우 2019년까지 관련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강원도 생산량의 경우 참깨, 감자 등 지역의 중요 품목에 대하여 2017년까지만 자료가 공개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2017년 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음.



○ 2017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를 보면, 전국의 농축산물 품목별 생산량은 다음과 같음.

표 3-3. 2017년 전국 농산물 품목별 생산량

(단위 : ha, 톤)

구분	면적	생산량
농업생산량		
농산물		
곡물류		
- 미곡	754,713	3,972,468
- 보리	29,096	109,726
- 밀	9,283	37,425
- 콩	45,556	85,644
- 기타두류	6,118	8,252
- 잡곡	25,800	86,026
- 감자	20,974	466,755
- 고구마	21,684	324,960
채소류		
양념채소류		
- 마늘	24,864	303,578
- 양파	19,538	1,144,493
- 고추	32,865	241,946
과일채소류		
- 수박	12,661	506,471
- 참외	3,581	166,281
- 오이	4,918	341,364
- 호박	9,095	312,690
- 토마토	5,782	355,107
- 딸기	5,907	208,699
- 메론	1,456	34,622
- 가지	619	31,306
과실류		
- 사과	33,601	545,349
- 배	10,861	265,757
- 포도	13,107	190,265
- 복숭아	21,030	222,284
- 감귤	21,587	597,294
- 단감	9,586	114,330

- 키위(참다래)	-	-
- 매실	-	-
- 자두	7,324	62,778
특용·기타		
- 참깨	29,682	14,258
- 들깨	43,352	50,738
- 인삼	14,832	23,310
- 화훼	2,535	
- 버섯	25	24,736
- 차	-	-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축산식품부

표 3-4. 2017년 전국 축산물 품목별 생산량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사육가구	마리수
- 한육우	98,570	3,019,500
- 낙농	6,503	408,830
- 돼지	4,406	10,513,803
- 육계	2,969	170,550,858
- 오리	497	7,530,433
- 벌꿀	24,629	2,388,237

자료: 국가통계포털

- 강원도의 농축산물 품목별 면적 및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3-5>, <표3-6>와 같음.

- 전국의 생산량 기준 품목 순위와 강원도 생산량 기준 품목 순위를 비교해보면, 미곡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나 전국 단위에서는 그 다음으로 양파, 감귤, 사과 순으로 생산량이 많았으며 강원도에서는 감자, 오이, 토마토 순임.

- 도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품목에서는 곡물류는 미곡, 양념채소류는 고추, 과일채소류는 오이, 과실류는 사과, 특용기타류에는 들깨로 나타났으며, 축산물의 경우 한육우의 사육가구가 가장 많음.

표 3-5. 2017년 강원도 농산물 품목별 생산량

(단위 : ha, 톤)

구분	면적	생산량
농업생산량		
농산물		
곡물류		
- 미곡	29,710	148,347
- 보리	144	294
- 밀	9	16
- 콩	4,403	6,217
- 기타두류	382	543
- 잡곡	6,536	28,014
- 감자	4,891	138,249
- 고구마	519	7,842
채소류		
양념채소류		
- 마늘	263	2,100
- 양파	33	1,962
- 고추	2,938	33,876
과일채소류		
- 수박	234	11,928
- 참외	26	552
- 오이	915	45,918
- 호박	1,203	32,623
- 토마토	852	44,808
- 딸기	73	1,460
- 메론	50	1,302
- 가지	167	3,697
과실류		
- 사과	930	5,550
- 배	190	3,387
- 포도	289	3,487
- 복숭아	551	4,009
- 감귤	0	0
- 단감	234	2,279
- 키위(참다래)	-	-
- 매실	-	-
- 자두	52	222
특용·기타		

- 참깨	736	327
- 들깨	6,024	6,205
- 인삼	2,865	4,887
- 화훼	33	
- 버섯	4	1,080
- 차	-	-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림축산식품부

표 3-6. 2017년 강원도 축산물 품목별 생산량

(단위 : 가구, 마리)

축산물	사육가구	마리수
- 한육우	7,374	213,001
- 낙농	277	18,742
- 돼지	271	466,252
- 육계	126	6,975,460
- 오리	165	4,087
- 벌꿀	2,606	161,219

자료: 국가통계포털

- 강원도의 품목별 생산량 비중은 아래 <표 3-7>과 같음.
- 도내 품목별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은 잡곡 32.6%, 감자 29.6%, 인삼 14% 순으로 크게 나타났음.

표 3-7. 2017년 강원도 농산물 품목별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

(단위 : 톤, %)

구분	전국 생산량	강원도 생산량	비중
농업생산량			
농산물			
곡물류			
- 미곡	3,972,468	148,347	3.7%
- 보리	109,726	294	0.3%
- 밀	37,425	16	0.0%
- 콩	85,644	6,217	7.3%
- 기타두류	8,252	543	6.6%
- 잡곡	86,026	28,014	32.6%
- 감자	466,755	138,249	29.6%

- 고구마	324,960	7,842	2.4%
채소류			
양념채소류			
- 마늘	303,578	2,100	0.69%
- 양파	1,144,493	1,962	0.17%
- 고추	241,946	33,876	14.00%
과일채소류			
- 수박	506,471	11,928	2.36%
- 참외	166,281	552	0.33%
- 오이	341,364	45,918	13.45%
- 호박	312,690	32,623	10.43%
- 토마토	355,107	44,808	12.62%
- 딸기	208,699	1,460	0.70%
- 메론	34,622	1,302	3.76%
- 가지	31,306	3,697	11.81%
과실류			
- 사과	545,349	5,550	1.02%
- 배	265,757	3,387	1.27%
- 포도	190,265	3,487	1.83%
- 복숭아	222,284	4,009	1.80%
- 감귤	597,294	0	0.00%
- 단감	114,330	2,279	1.99%
- 키위(참다래)	-	-	-
- 매실	-	-	-
- 자두	62,778	222	0.35%
특용·기타			
- 참깨	14,258	327	2.29%
- 들깨	50,738	6,205	12.23%
- 인삼	23,310	4,887	20.97%
- 화훼	-	-	-
- 버섯	24,736	1,080	4.37%
- 차	-	-	-

자료: 국가통계포털

- 축산물은 한육우 7.05%, 벌꿀 6.75%, 낙농 4.58% 순으로 국내 총 생산 대비 도내 생산 비중이 크게 나타났음.

표 3-8. 2017년 강원도 축산물 품목별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전국 축산물	강원도 축산물	비중
- 한육우	3,019,500	213,001	7.05%
- 낙농	408,830	18,742	4.58%
- 돼지	10,513,803	466,252	4.43%
- 육계	170,550,858	6,975,460	4.09%
- 오리	7,530,433	4,087	0.05%
- 벌꿀	2,388,237	161,219	6.75%

자료: 국가통계포털

### 3. 분석 결과

#### 3.1. 강원도 농업 파급효과 총괄

-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감축 및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기준 (Baseline) 시나리오 대비 강원도 농업부문 피해액은 협상 발효 이후 연평균 약 50억 원으로 예측되었으며, 15년 누적 피해액은 약 756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이러한 피해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계측한 것이며 농업부문의 유발계수가 1.9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평균 95억 원의 직간접 피해가 예상됨.
- 부류별 연평균 피해액을 살펴보면, 농산물에서 피해가 44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고, 그 중 곡물은 연평균 22.9억 원, 양념채소 4.8억 원, 과일채소 8천만 원, 과실 3.3천만 원, 특용·약용작물 15.5억 원, 축산물 6.1억 원으로 분석되었음.
- 곡물류 중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감자(22.6억 원)로 나타났으며, 양념채소류에서는 고추(4.7억 원), 과일채소류에서는 호박(4.3천만 원), 과실에서는 포도(1.7천만 원), 특용·기타 작물에서는 들깨(10.4억 원), 축산물은 돼지(3.4억 원)로 나타남.

표 3-9.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농업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누적	15년누적	평균	
				10년	15년
농업생산액	67,533	4,487,869	7,556,058	448,794	503,747
농산물	59,364	3,993,595	6,644,249	399,368	442,963
축산물	8,170	494,275	911,808	49,426	60,784

### 3.2. 강원도 곡물부문 시나리오 분석 결과

- 감자는 시나리오 상 현행관세 수준인 304%에서 91.2%로 큰 폭으로 감축됨에 따라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감자의 경우 전국 생산량 대비 도내 생산량의 비중이 29.6%로 높아 강원도 감자 생산액의 피해가 높게 나타남.
  - 감자와 잡곡을 제외한 곡물 내 타 품목의 경우, 도내 생산량 비중이 높지 않아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잡곡의 경우에는 관세 감축 폭이 크지 않아 전국적으로도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10.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곡물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누적	15년누적	평균	
				10년	15년
곡물류	45,350	2,146,707	3,429,886	214,672	228,663
- 미곡	118	4,348	12,288	433	818
- 보리	1	16	29	2	2
- 밀	0	0	0	0	0
- 콩	22	628	788	66	51
- 기타두류	99	11,629	22,737	1,162	1,518
- 잡곡	0	1,011	1,956	98	130
- 감자	45,110	2,129,069	3,392,071	212,913	226,144

- 고구마	0	7	17	0	0
-------	---	---	----	---	---

### 3.3. 강원도 양념채소부문 시나리오 분석 결과

- 양념채소 부문에서는 고추가 현행관세가 높은 건고추(270%)의 감축폭이 크기 때문에 타 채소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전국 생산량 대비 도내 생산량의 비중이 14%로 타 품목에 비해 높아 강원도 고추 생산액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1.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양념채소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누적	15년누적	평균	
				10년	15년
양념채소류	2,355	403,967	712,462	40,394	47,500
- 마늘	15	2,024	3,554	202	237
- 양파	2	115	199	12	13
- 고추	2,338	401,828	708,708	40,180	47,250

### 3.4. 강원도 과일채소부문 시나리오 분석 결과

- 과일채소류의 경우, 관세 감축 폭이 높은 편이긴 하나 기존의 수입 물량이 많지 않고 현재 관세 수준도 곡물이나 특용작물에 비하여 높은 편은 아니라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오이, 호박, 토마토의 전국 생산량 대비 도내 생산량의 비중은 각각 13.45%, 10.43%, 12.62%이며, 과일채소류 중에서는 호박의 연평균 피해액이 4천만 원 정도로 가장 높게 예측되었음.

표 3-12.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과일채소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누적	15년누적	평균	
				10년	15년



과일채소류	624	68,788	121,553	6,883	8,111
- 수박	163	9,520	17,363	951	1,156
- 참외	10	454	757	46	50
- 오이	0	686	1,385	67	94
- 호박	0	36,755	64,614	3,671	4,308
- 토마토	328	15,712	27,373	1,578	1,830
- 딸기	108	4,659	8,014	466	534
- 메론	15	564	1,173	56	79
- 가지	0	437	874	47	59

### 3.5. 강원도 과실부문 시나리오 분석 결과

- 과실류의 대부분 품목은 SPS 수입규제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이들의 피해액은 오렌지 및 열대과일의 관세감축에 따른 간접효과임. 반면 포도는 도내 생산량 비중이 전국 대비 1.83%에 불과하지만 외국산 포도의 관세감축으로 인한 직접효과를 받기 때문에 피해액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3-13.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과실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누적	15년누적	평균	
				10년	15년
과실류	358	28,355	48,966	2,836	3,263
- 사과	67	5,850	10,151	585	676
- 배	24	2,096	3,532	210	235
- 포도	205	15,004	25,832	1,501	1,722
- 복숭아	52	4,394	7,715	439	515
- 감귤	0	0	0	0	0
- 단감	8	874	1,471	88	98

- 키위	0	0	0	0	0
- 매실	0	0	0	0	0
- 자두	2	138	266	14	18

### 3.6. 강원도 특용 및 기타부문 시나리오 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는 여타 품목과 비교하여 참깨의 높은 현행 관세율과 시나리오 상의 높은 관세 감축률로 인하여 예상 피해액이 특용 및 기타작물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원도의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이 2.29%에 불과하여 도내 생산에 대한 파급효과는 낮게 나타났음. 반면 들깨의 경우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이 12.23%에 이르러 연간 피해액 규모가 10억 원 정도로 높게 분석되었음.

표 3-14.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특용 및 기타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누적	15년누적	평균	
				10년	15년
특용·기타	10,677	1,345,779	2,331,382	134,583	155,426
- 참깨	3,389	408,002	703,252	40,801	46,883
- 들깨	6,910	896,227	1,559,692	89,621	103,979
- 인삼	377	41,458	68,215	4,152	4,550
- 화훼	0	0	0	0	0
- 버섯	0	92	223	9	13
- 차	0	0	0	0	0
- 벌꿀	1,863	106,893	179,861	10,692	11,988

### 3.7. 강원도 축산물부문 시나리오 분석 결과

- 시나리오 상의 관세 감축으로 인한 돼지고기 전체 수입량의 증가 폭은 크지 않음

나 돼지 농업생산액(2017년 7조 3,380억 원)은 2017년 농림업 생산액 중 가장 클 정도로 농업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감축에 따른 파급영향이 타 축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표 3-15. 미래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축산물부문 예상 파급영향  
단위: 만 원

구분	초기연도	10년누적	15년누적	평균	
				10년	15년
축산물	8,170	494,275	911,808	49,426	60,784
- 한육우	1,248	94,209	187,163	9,419	12,479
- 낙농	23	2,308	4,214	229	279
- 돼지	4,620	272,489	508,010	27,249	33,867
- 육계	413	18,282	32,397	1,828	2,160
- 오리	2	93	164	9	11
- 벌꿀	1,863	106,893	179,861	10,692	11,988

### 3.8. 소결

- 미래 농업협상에 대한 관세 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발효가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강원도 농축산물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감자로 분석되었음. 다음으로는 들깨, 고추, 참깨 순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해당 품목들의 현행 영허 관세사 270~630%로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시나리오 상에서 높은 관세 감축 폭을 적용받기 때문임.
  - 특히 들깨와 감자의 경우 전국 생산량 대비 도내 생산량의 비중이 각각 12.23%, 29.6%로 타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내 파급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어디까지나 미래 농업협상에 대한 관세 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현 시점에서 발효가 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농업협상의 실제

결과, 강원도 농업의 생산구조의 변화, 품목별 가격의 변화, 수출입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시나리오분석 결과는 단지 참고를 위한 것이며, 피해 품목과 피해 규모는 협상이 진행되면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전반적인 농업농촌의 역량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도입으로 미래 농업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 품목별 전국 생산량 대비 도내 생산량 비중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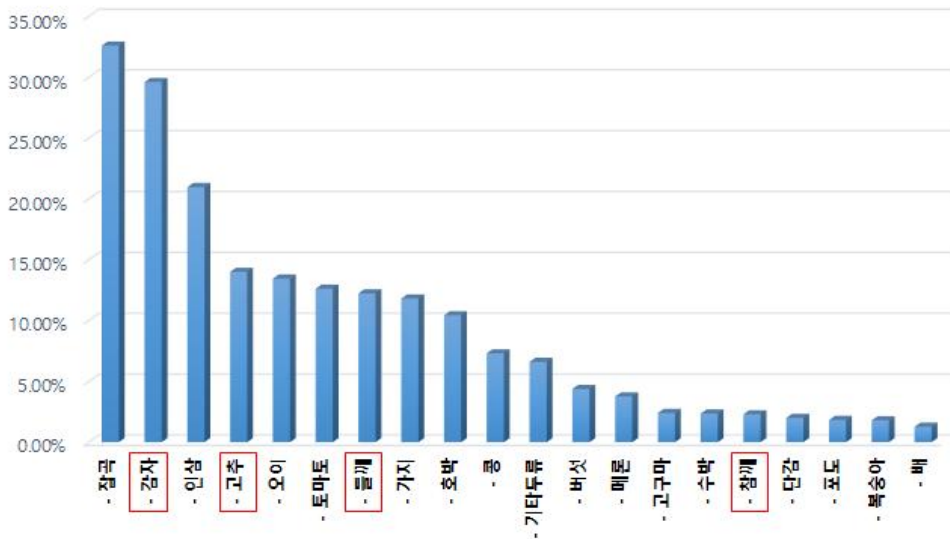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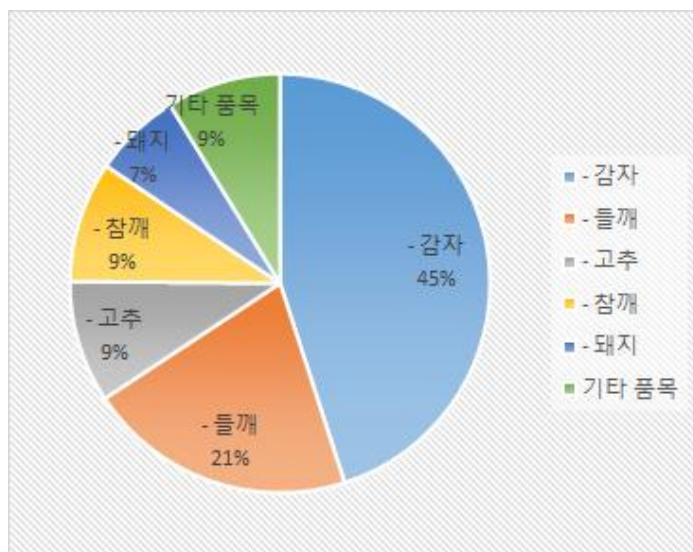


그림 3-3. 강원도 내 품목별 파급영향 비중



##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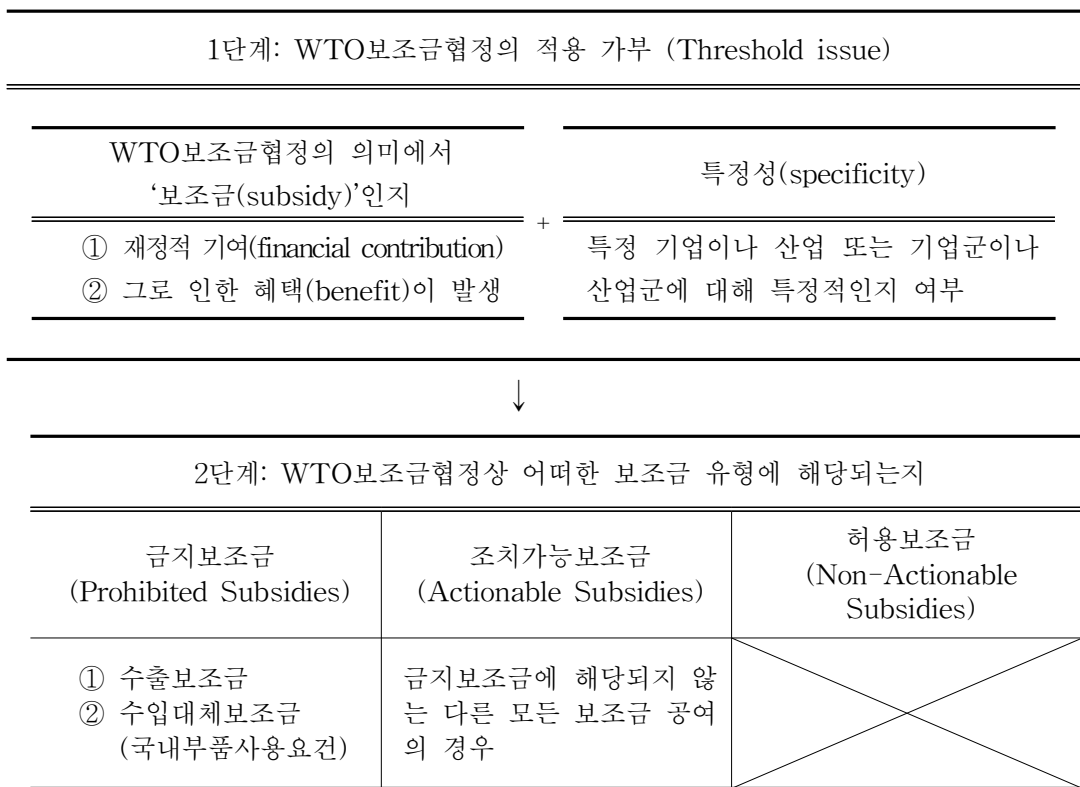
### 통상법상 허용보조 검토

#### 1. WTO보조금협정의 기본구조 및 적용순서

- [1단계: 적용가능성(threshold)]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고, 그로 인해 ②수혜기업·산업에게 “혜택(benefit)”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보조금이 ③특정 기업·기업군·산업·산업군에게 “특정적(specific)”으로 공여된 경우 → 해당 지원조치는 “보조금(subsidy)”으로서, 보조금협정의 적용을 받게 됨.
- [2단계: 보조금의 유형에 대한 검토]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은 ①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y)과 ②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y)이 있음.
  - (금지보조금의 경우) ( i )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과 (ii) 수입대체보조금(import substitution subsidy; local content requirement)이 여기에 해당됨. 금지보조금은 그 존재 자체로서 금지됨. 즉 해당 보조금으로 인해 다른 WTO회원국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제소국이 입증할 필요가 없음(WTO보조금협정 제3조~제4조).
  - (조치가능보조금의 경우) 금지보조금이 아닌 나머지 보조금 유형 모두가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됨. 금지보조금과는 달리, 조치가능보조금은 보조금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해당 보조금으로 인해 다른 WTO회원국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른 WTO회원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actionable)’할 뿐임.

- [3단계: 보조금에 대한 취할 수 있는 조치] 보조금을 지원받고 만들어진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은 ① 국경에서 해당 상품(subsidized import)에 대해 상계관세(CVDs)를 부과하거나 또는 ② 보조금을 공여한 국가를 WTO에 제소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한 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와 WTO제소를 동시에 병행할 수는 없음
  - 단, 한 보조금 지원 건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시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제3국 시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 국내시장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 시장에서의 피해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것은 가능

그림 4-1.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순서



3단계: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생산된 수출국 상품이 수입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금지보조금 공여의 경우(① or ②)		조치가능보조금 공여의 경우(② or ③)
① 다자적 접근법: WTO제소	② 일방적 접근법: 상계관세(CVDs) 부과	③ 다자적 접근법: WTO제소
↓ 조치가능보조금과는 달리, 금지보조금은 그 자체로서 WTO협정상 금지되므로 피해 등을 달리 입증할 필요가 없음	수입국 조사당국은 자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음을 보이고 + 보조금을 받은 수입상품으로 인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인과관계)을 보여야 함	제소국(수입국 조사당국)은 수출국의 보조금 공여로 인한 ‘부정적 효과’ 즉 ① 피해, ②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③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1단계에서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특정성에 대하여서는 다음 표와 같이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표 4-2. WTO보조금협정 제2조에 따른 특정성의 판단기준

1	법률상 특정성 (제2조 제1항 (a)호)	보조금 공여의 근거 법률이 보조금 수혜조건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특정성이 있음
	US - Upland Cotton (패널)	근거법령상의 문언에 주목: 보조금 공여의 근거법률이 보조금 수혜대상으로서 특정 목화상품의 생산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특정성이 있다고 봄 아울러 (i) 문제된 보조금이 농업 부문 내 특정 부분의 산업에만 공여되었다는 점, (ii) 수혜산업들이 8개 정도의 세부상품만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점, (iii) 해당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농업부문과 농업상품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
	EC - Large Civil Aircraft (패널 및 상소기관)	패널은 US - Upland Cotton 사건 패널 입장에 일부 동의하면서, 특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특정 상품 생산자 집단’으로만 보조금 공여가 국한되어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보조금이 경제 전반에 걸쳐 충분히 폭넓게 이용가능한지 여부라고 봄. 상소기관도 패널 판단을 지지
	U S -	법률상 특정성의 경우, ‘보조금이 특정 기업들에게만 공여되

	A D / C V D (China) (상소기관)	있는지(has been granted)’가 아니라 ‘보조금의 수혜가능성이 명백하게 한정되었는지(access ... explicitly limited)’가 중요한 문제임 즉 문제된 보조금을 특정 기업들이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eligible)’가 법률상 특정성 판단에 중요함
	US - Large Civil Aircraft (패널 및 상소 기관)	패널은 보조금 수혜가능성이 “명백하게 한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보조금 공여의 근거법률, 또는 공여당국이 보조금 공여대상을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그 밖의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상소기관도 패널 판단을 지지
2	객관적 수혜기 준 유무 (제2조 제1항 (b)호)	공여당국 또는 보조금 공여의 근거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조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objective criteria or conditions)”을 규정하고, 보조금 수혜조건이 자동적이며 엄격히 준수되며,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된 경우, 특정성이 없음 (b)호에 따른 특정성 판단에서는 “보조금의 수혜기준 또는 조건이 규정되고 준수되는 방식(the manner in which the criteria or conditions of eligibility are prescribed and adhered to)”이 중요함
3	사실상 특정성 (제2조 제1항 (c)호)	위 (a)호와 (b)호에 비추어 외견상 ‘비특정적’이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음 예: (i) 한정된 특정 기업들만에 의해 보조금제도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ii) 특정 기업에 의해서만 보조금 계획이 압도적으로 사용(predominant use)되고 있는지 여부, (iii) 특정 기업에게 불균형적으로 많은(disproportionately large)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iv)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에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 등((c)호 2문)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3단계에서는 보조금 공여가 제소국 국내산업에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3. WTO보조금협정 제5조 '부정적 효과'의 내용 요약

제 5 조 부정적 효과	어떤 회원국도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0%;">부정적 효과의 구체 유형</th> <th style="width: 50%;">상세내용</th> </tr> </thead> <tbody> <tr> <td>(a)</td> <td>피해(injury)</td> <td>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11</td> </tr> <tr> <td>(b)</td> <td>무효화 또는 침해 (nullification or impairment)</td> <td>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동협정 제2조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12</td> </tr> <tr> <td>(c)</td> <td>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td> <td>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13</td> </tr> </tbody> </table>		부정적 효과의 구체 유형	상세내용	(a)	피해(injury)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11	(b)	무효화 또는 침해 (nullification or impairment)	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동협정 제2조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12	(c)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13			
		부정적 효과의 구체 유형	상세내용														
	(a)	피해(injury)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11														
(b)	무효화 또는 침해 (nullification or impairment)	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동협정 제2조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12															
(c)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13															
6.3 아래 사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제5조 제(c)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제 6 조 심각한 손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0%;">심각한 손상의 발생위치</th> <th style="width: 50%;">상세내용</th> </tr> </thead> <tbody> <tr> <td>(a)</td> <td>보조금을 공여한 국가 내</td> <td>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td> </tr> <tr> <td>(b)</td> <td>제3국 시장</td> <td>보조금으로 인하여 제3국 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td> </tr> <tr> <td>(c)</td> <td>1보조금 공여국, 2심각한 손상을 입은 국가, 또는 3제3국</td> <td>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td> </tr> <tr> <td>(d)</td> <td>세계시장 (점유율)</td> <td>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상품 또는 산품17에 있어서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심각한 손상의 발생위치	상세내용	(a)	보조금을 공여한 국가 내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b)	제3국 시장	보조금으로 인하여 제3국 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c)	1보조금 공여국, 2심각한 손상을 입은 국가, 또는 3제3국	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d)	세계시장 (점유율)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상품 또는 산품17에 있어서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의 발생위치	상세내용														
	(a)	보조금을 공여한 국가 내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b)	제3국 시장	보조금으로 인하여 제3국 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c)	1보조금 공여국, 2심각한 손상을 입은 국가, 또는 3제3국	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d)	세계시장 (점유율)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상품 또는 산품17에 있어서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보조금협정 제3조 제1항 (a)호 두문은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 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함.
- 과거에는 농업협정 제13조(적절한 자제)(소위 “Peace Clause”)에 따라 이행기간 (1995년부터 9년간) 동안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금에 보조금협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평화조항이 만료(‘03.12.31일)된 지금은 농산물 보조금에도 보조금협정이 적용 가능함. 일례로 미국은 ‘18.7.25일에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되는 올리브 (ripe olive)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함. 이에 대해 EU는 미국을 상대로 ‘19.1.25일 WTO에 소를 제기한 상태임(DS577).

표 5-1. DS577 사건 요약 및 경과

제 소	유럽연합
피 소	미 국
청구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a)호, 제1조 제1항 (b)호, 제1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조 제1항 (a)호 내지 (c)호, 제2조 제2항, 제2조 제4항,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제32조 제1항</li> <li>- GATT 제VI조 제1항 내지 제3항</li> <li>- 반덤핑협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조 제5항</li> </ul>
사건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요청일: 19.1.29일</li> <li>- 호주 제3자 참여 요청일: ‘19.2.12일</li> </ul>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개별국가가 일정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통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거나 경쟁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하는 국내보조(domestic support)는 허용보조(green box)와 감축보조(amber box)를 포함하는데, 감축보조(amber box)의 경우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켜 시장을 왜곡시킴.

## 2. WTO 허용 보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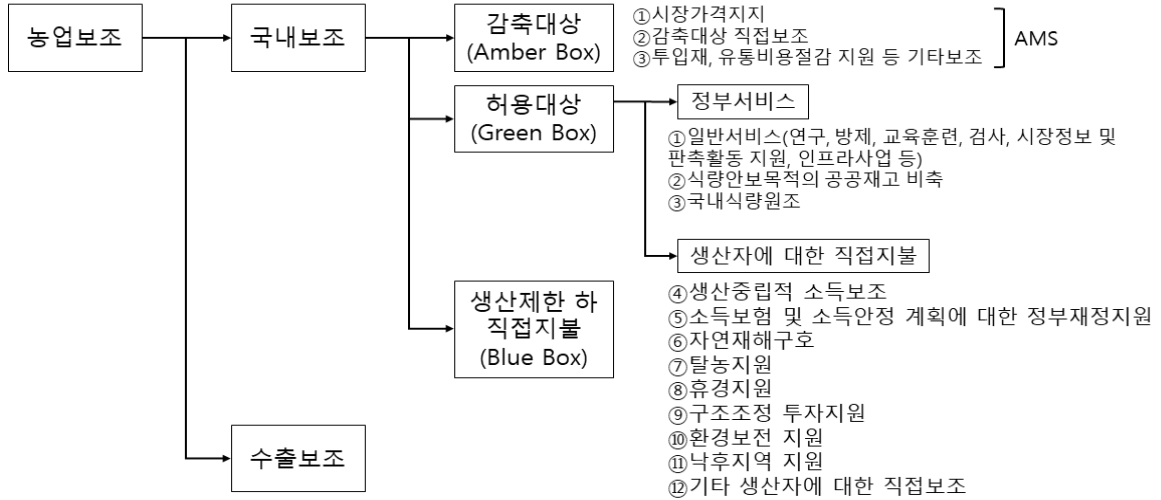
- 1948년 GATT체제 수립 이후 자유무역의 지속적인 추구에도 불구하고 농업만은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서 각국의 과도한 농업보조 및 과잉생산으로 세계농산물 무역질서 왜곡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으며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한 본격적인 거론이 시작됨.
- 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산물 협상에 관한 최초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993년 UR협상 타결과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WTO 농업협정(AoA: Agreement of Agriculture)’<sup>2)</sup>이라는 전 세계 농업 무역규범이 탄생함.
- 국내보조(domestic subsidy) 분야의 대원칙은 국내 농업관련 보조금을 ‘감축대상 보조’와 ‘허용보조’로 분류하여 전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며, 주요규정으로 허용보조 범위 및 기준, 감축대상 방식 및 폭, 생산제한 하 직접지불에 관한 내용이 있음.
- 현행 농업보조는 엠버, 블루, 그린의 교통 신호등 체계<sup>3)</sup>를 따르고 있음.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시장가격지지와 같은 보조는 엠버,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와 같이 왜곡이 없거나 사실상 최소인 것은 그린, 생산제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블루로 구분함(윤동진, 2015). 또한 감축대상(amber box)보조라고 해도 보조규모가 생산액의 5%(개도국의 경우 10%) 이하일 경우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에 해당되어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sup>4)</sup>에 해당되지 않음.

2) 21개 조 5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품목에서 수산물은 제외됨. 시장접근분야, 국내보조분야, 수출보조분야의 3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3) 각각 감축대상, 생산제한 하 직접지불(잠정 허용), 허용대상에 해당됨.

4) 일정한 허용기준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는 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로 표시하며 감축해야 함.

그림 4-1. WTO 농업보조금의 국내보조 유형 구분



자료: 박민선·허남혁·강마야·이관률(2014)

○ WTO는 농업보조금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①생산자 직접지불금, ②생산요소 지원, ③생산촉진 및 통제 목적 보조, ④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장에 사용되는 예산, ⑤수요 확대를 위한 지원(소비자), ⑥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분됨(박민선 외, 2015).

- 농업보조금은 크게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되고, 국내보조는 크게 감축대상(amber box)<sup>5)</sup>과 허용대상(green box)<sup>6)</sup>, 그리고 생산제한 하 직접지불(blue box)로 구분됨.

- ①생산자 직접지불금, ⑤수요 확대를 위한 지원(소비자), ⑥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은 허용대상에 해당됨.

- 생산요소 지원, ③생산촉진 및 통제 목적 보조, ④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장에 사용되는 예산은 감축대상에 해당됨.

○ WTO 허용대상 보조는 ‘정부서비스’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5) 무역 및 생산에 대하여 왜곡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행 기간 내에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

6) 무역 및 생산에 대하여 왜곡 효과가 없거나 아주 작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축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보조금.

- 정부 서비스에 해당하는 허용 보조는 1) 일반서비스(연구, 방제, 교육훈련, 검사, 시장정보 및 판촉활동 지원, 인프라사업 등) 2) 식량안보목적의 공공재고 비축, 3) 국내식량원조가 있음.
-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에 해당하는 허용 보조는 1)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2)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 계획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3) 자연재해구호, 4) 탈농 지원, 5) 휴경지원, 6) 구조조정 투자지원, 7) 환경보전 지원, 8) 낙후지역 지원, 9) 기타 생산자에 대한 직접보조가 있음.

### 3. 선진국 사례

-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농식품 수출 선진국들이 WTO에 통보한 허용 대상(green box) 보조금 지급실적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경우 연구, 해충과 질병관리, 순회 교육 및 자문, 검역, 마케팅 및 프로모션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국내 식량지원 등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미국은 허용 보조 금액의 대부분을 국내 식량지원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 식량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에서도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 아동영양프로그램, 여성, 유아동 대상 특별보조영양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음.
  -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은 미국내 저소득층에게 식품 구입을 보조해 식량 불안정 상황을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슈퍼마켓, 파머스마켓 등 다양한 곳에서 미리 충전된 직불 카드를 통해 식품 또는 식료품(동물 사료 제외), 유아 분유, 당뇨 및 다이어트 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신선농산물 등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어 농가경영에도 큰 기여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아동영양프로그램은 국립학교 점심 프로그램, 학교 아침급식 프로그램, 여름 급식 제공 프로그램, 아동성인 급식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프로그램 역시 아동에 대한 영양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신선농산물 등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어 농가경영에도 큰 기여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4-9. 2016년도 미국의 WTO통보 허용보조

분류	내용		금액 (백만USD)
일반서비스			
연구	농업연구소 (ARS)	농업연구	1,118
		건물&시설	5
		각종 기부금	26
	국립농식품연구소 (NIFA)	연구 및 교육활동	740
		통합교육연구활동	99
		바이오메스연구개발	15
	농촌사업협동개발국(RBCD)	농촌협동개발기금	32
	수석경제학자실(OCE)	세계농업전망위원회(WAOB)	5
	경제연구소(ERS)	경제연구소	94
	국립농업통계소(NASS)	국립농업통계소	155
		소계	2,289
해충과 질병 관리	동실목검역소 (APHIS)	검역 및 해충질병관리 기능	1,446
		해충질병으로부터 동식물 보호	7
		각종 신탁자금	8
			소계
순회교육 및 자문	농업진흥청(FSA) 및 자연자원보호청(NRCS)	농지보전프로그램 기술지원	75
	자연자원보호청(NRCS)	순회교육, 자문, 훈련	749
		자원보존 및 개발	-
	해외농업국(FAS)	농민 대상 무역조정지원	-
	국립농식품연구소(NIFA)	지도활동, 자문	469
		소계	1,293
검역	곡물검역포장가축청(GIPSA)	검역 활동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43
	식품안전검사국 (FSIS)	가금육 및 육류 품질 보장을 위한 검역활동	1035
		검역 및 등급분류	11
			소계
마케팅 및 프로모션 서비스	농업마케팅지원청 (AMS)	마케팅 서비스	118
		마케팅 정보 향상 등급 기준 개발 등을 위한 프로젝트	64
		부패농산물관리법 기금	1
		농산물 경비 및 환불금, 검역, 등급 부여	181
			소계

분류	내용		금액 (백만USD)
일반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위험관리청 (RMA)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 관리 기금	82
		보험사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보상	1,460
		보험사에 대한 보험영업이익	1,833
	소계		3,375
기타 일반서비스	州 농업 프로그램	각 주별 순회교육, 마케팅, 연구 등 서비스	2,660
	소계		2,660
국내 식량지원	식품소비자청 (FCS)	영양프로그램 관리	151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	73,081
		아동영양프로그램	21,978
		여성, 유아동 대상 특별보조영양프로그램	5,964
		상품지원프로그램	268
	농업마케팅지원청 (AMS)	섹션32	801
	농업진흥청(FSA)	유제품기부프로그램	-
소계		102,243	
비연계 소득보조	농업진흥청 (FSA)	직접지불	11
		담배할당인수	7
		면화전환지원프로그램	1
	소계		19
자연재해 구제자금	농업진흥청 (FSA)	무보험 작물재해지원 프로그램	159
		긴급융자	1
	소계		160
투자 지원	농업진흥청 (FSA)	농가신용프로그램	128
		州 중재보조금	3
	소계		131
환경 프로그램	농업진흥청 (FSA)	농지보전프로그램	1,821
		긴급보전프로그램	28
		보전융자	-
		야생동식물 서식지 장려	2
	자연자원보호청 (NCRS)	농업관리지원프로그램	1
		보전책무프로그램	1,098
		초지보전프로그램	18
		습지보전프로그램	107
		야생동식물 서식지 장려	20
농지보호프로그램	30		

분류	내용		금액 (백만USD)
일반서비스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	1,193
		농업용수향상프로그램	17
		피크만유역 환경보전 장려	10
		농업환경보전 지역권 프로그램	30
		권역보전 제휴프로그램	14
	농업진흥청(FSA)	국가 유기인증비용 분담 프로그램	10
		소계	4,399
허용보조총계			119,492

자료: 미국의 WTO 통보문서, WTO, G/AG/N/USA/123.

- 뉴질랜드의 경우 연구, 해충과 질병관리, 인프라 서비스 등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허용 보조 금액의 상당 부분을 해충과 질병관리에 투입하고 있으며, 해충과 질병관리 프로그램으로 중에서도 국경 생물보안 감시 및 제거, 생물보안 침투 대응과 장기적 해충관리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음. 또한 뉴질랜드는 농업 생산 관련 연구에도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음.
  - 뉴질랜드에서 해충과 질병관리에 보조금 투입 비중이 높은 것은 깨끗한 자연 환경을 브랜드 가치로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면적 대비 낮은 인구 밀도와 생산자 수로 인하여 식량지원이나 소득보조 형의 보조금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임.

표 4-10. 2017년도 뉴질랜드의 WTO통보 허용보조

분류	내용		금액 (백만NZD)
일반서비스			
연구		사료, 동물 및 유제품 산업, 원예, 경작 및 기타 식품 및 음료 산업을 포함한 농업 생산 관련 연구	121.383
		지속가능 농업 기금	8.174
		1차산업증진 파트너십	39.299
		소계	167.86
해충과 질병 관리		국경 생물보안 시스템 개발 및 유지	18.611



분류	내용	금액 (백만NZD)
일반서비스	국경 생물보안 감시 및 제거	117.738
	생물보안 침투 대응과 장기적 해충관리	96.427
	국내 생물보안 감시	45.338
	결핵 매개체 관리	26
	관할시당국 해충 및 질병 관리	30.546
	소계	334.66
	인프라 서비스	지역사회 관개 계획
	관할시당국 홍수 관리	30.234
	소계	33.67
자연재해 구제자금	기후변화	1.028
	농촌지원자금	0.277
	소계	1.31
투자 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지원	관할시당국 토양 보전	36.03
	소계	36.03
허용보조총계		573.52

자료: 뉴질랜드의 WTO 통보문서, WTO, G/AG/N/NZL/111.

-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연구, 해충과 질병관리, 훈련, 순회 교육 및 자문, 마케팅 및 프로모션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기타 일반서비스, 비연계소득보조 등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스라엘은 허용 보조 금액의 상당부분을 연구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열악한 농업 생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임.
  -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의 가금육 생산자에 대한 생산 비연계 소득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사막의 특성상 자연재해 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표 4-11. 2017년도 이스라엘의 WTO통보 허용보조

분류	내용		금액 (천 USD)
일반서비스			
연구	농업연구소	일반운영비	56,659
		인프라투자	48,191
		연구소 및 시설 운영	-
	수석과학자 연구기금	연구목적 일반운영비	27,231
		Kemah 기금 - 농업수석과학자기금	463
	소계	132,544	
해충과 질병 관리	식물보호서비스		10,423
	수의과서비스		7,822
	소계		18,245
훈련	지식 보급, 농민 훈련 및 기술지원		838
순회교육 및 자문	농민조직에 대한 지원		17
검역	검역 및 훈련		-
마케팅 및 프로모션	마케팅 프로모션		2,146
인프라 서비스	토양보전 및 배수시설		16,582
	농업투자		3,833
	소계		20,415
기타 일반서비스	농업부 일반운영비		137,415
	목초지 권한		10,390
	소계		147,805
식량안보목적 공공비축	곡물 비축		11,774
비연계 소득보조	갈릴리지역 가금육 생산자에 대한 지불		13,039
	이스라엘 농업 종사자 격려		5,577
	소계		18,616
자연재해 구호자금	자연재해보험기금		25,909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농민들에 대한 선불		30,957
	자연재해보상		8,692
	소계		65,558
환경 프로그램	낙농가 환경개선		222
	유대인 안식년		1,862
	소계		2,084
지역지원 프로그램	입주 인프라		2,102
허용보조총계			422,144

자료: 이스라엘의 WTO 통보문서, WTO, G/AG/N/ISR/66.

- 일본의 경우 일반 서비스,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국내 식량지원, 생산자 퇴직 프로그램, 환경 프로그램 등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일본은 허용 보조 금액의 대부분을 일반 서비스에 투입하고 있으며,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중에서도 관개/배수시설 및 농촌도로의 건설, 경지 정리 등 농업부문 및 농촌지역 기반시설과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음.
  - 일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논을 환경적으로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쌀이 아닌 타작물 재배활동 혹은 다른 적절한 관리에 대한 지불과 경영 이전을 조건으로 은퇴한 농민에 대한 연금 지급이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12. 2016년도 일본의 WTO통보 허용보조

분류	내용		금액 (10억 엔)
일반서비스	연구	일반 연구, 환경 프로그램 관련 연구 및 특정 제품과 관련된 연구 프로그램	81.1
	식물보호	일반 및 제품별 해충과 질병 관리 조치	10
	동물건강관리	가축 및 동물 의약품 검사를 위한 일반 및 제품별 동물 건강 관리	9.1
	순회교육	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교육, 순회교육, 자문 및 프로그램	18.9
	농업단체 관리 편리화	농업기구를 통한 훈련 및 자문 편리화	42.4
	통계자료 및 정보 수집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통계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7
	순회교육 및 인프라서비스	농업 생산의 기술 향상을 위한 순회교육 및 자문, 연구 프로그램, 인프라 서비스	113.3
	축산업 종합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기술에 관한 순회교육 자문, 축산물 진흥을 위한 정보 제공	111.9
	식품 마케팅, 가공 및 소비 개선 프로그램	소비자에게 마케팅 정보 제공, 식품 또는 농산물 가공 관련 연구, 마케팅 홍보 및 검사	21.9
	농업생산자재 검사 및 정보 제공	농업기계, 비료, 농약, 종자, 묘목 등에 대한 검사, 연구, 순회교육 및 자문	0.7
	농업부문 및 농촌지역 기반시설	관개/배수시설 및 농촌도로의 건설, 경지 정리	564.8
	재해 복구	관개/배수시설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골 도로의 재건	119.2

분류	내용		금액 (10억 엔)
	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효과적인 농지 활용을 위한 자문	5.9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193.1
	소계		1,296
식량안보목 적 공공비축	공공비축	쌀, 밀, 보리, 콩과 사료의 공공 비축	17.3
국내 식량지원	학교 급식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쌀, 우유, 과일 주스를 보조금이 지급된 가격에 공급	0.7
자연재해 구제자금	농업보험제도	보험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36.2
	자연재해 구제용자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용자	-
	소계		36.2
생산자 퇴직 프로그램	농민 연금 프로그램	경영 이전을 조건으로 은퇴한 농민에 대한 연금 지급	119.9
투자 지원	투자 보조 농업 용자	정부의 농업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이자 할인	13.8
	농민과 농지 문제해결목적 조치	농지 축적 문제 등에 관한 조치	16.2
	소계		30
환경 프로그램	쌀생산 전환비용	논을 환경적으로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쌀이 아닌 타작물 재배활동 혹은 다른 적절한 관리에 대한 지불	322.2
	낙농으로 인한 환경부담 경감 지원 프로그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를 실천하는 낙농가에 대한 지급	6.8
	토지, 물 및 환경을 보존 및 개선하기 위한 조치	지역사회 협력 활동에 대한 지원	49.1
		소계	378
지역지원 프로그램	구릉지 및 산악지대의 농민에게 직접 지급	지역사회 협약에 따라 최소 5년간 농업 활동을 지속하는 농민에 대한 지급	26.3
허용보조총계			1,904.5

자료: 일본의 WTO 통보문서, WTO, G/AG/N/JPN/236.

## 제 5 장

###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농업정책 발굴

#### 1. 강원도 농업정책 현황

##### 1.1. 농정과

###### ○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및 여성으로서 만50세 이하인 자 중 영농에 종사경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농지구입, 하우스 시설 설치, 과원 조성, 축사 신축 등에 최고 2억 원 까지 농업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산물 가격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수입시장개방 등 국내외 적으로 농업경영의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도에서는 농업경영 부담 경감 및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장기 지원과 농촌지역 정주의식 고취,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 대표적 성과로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이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을 통해 도내 생산 농림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 2017년 기준 5개 시·군 409명으로 16년도 대비 749%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국 최대수치임.
  -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 하였음.
  - 외국 지자체 양해각서체결, 다문화가족 초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자생적 기업형 새농촌 육성
  - ‘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주민 주도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마을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 맞춤형 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분을 구축하였고, 2018년에는 총 65개 마을을 육성 및 지원하였음.
  - 주민역량과 마을개발사업의 경험축적 등을 위한 기초마을은 40개 마을로 시군에서 선정하여 추진
  - 도약·선도마을은 현장평가를 통하여 각각 20개, 5개 등 총 25개 마을을 선정하여 진행
- 농촌융복합산업화 고도화로 고소득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
  - 강원도는 2008년부터 농업·농촌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대표 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우수 생산 경영체 육성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2. 축산과

- 강원한우 브랜드통합
  - 강원한우 브랜드통합으로 유통경쟁력 강화 및 한우수출기반 구축 하여 우수한 품질과 성공적인 브랜드 네이밍으로 2017년 5위를 하였으며, 소비자 인지도 상승에 기여.
  - 2017년 축산물 브랜드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17~'18 2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 강원 꿀 명품화 부가가치 제고
  - 강원도 양봉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강원양봉 브랜드 개발에 착수하여 2013년 전국 최초로 강원양봉 공동브랜드 ‘허니윈’을 개발.
  -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공동브랜드의 활용 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4종의 용기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장비, 기자재 및 홍보비를 지원.
-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촉진
  -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따른 국내 소비 위축 등 대외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도내 한우 농가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우 생산농가 자가 판매점을 개설하여 유통단계 축소, 공정가격을 유도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지원.
  - 한우생산농가 협의체를 선정하여 직거래판매장에 필요한 식육처리장비, 식당 내부시설, 냉동차량 지원 등 2018년까지 16개소 92억 4,5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육가공 시설에 4억 원을 지원.

### 1.3. 유통원예과

-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
  - 산지유통시설(APC)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58억 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 활성화 및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향상에 기여.
  - 농산물 마케팅지원 3개소 5억 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50만매 54억 원, 29개 농협 30품목 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비 27억 원 등 총 37억 원을 투자.
  - 2018년 기준 매출액 2,800억 원을 달성하여 전국 최우수 마케팅 조직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 달성.
-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
  -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으로 14개소에 1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평창·정선 지역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또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총 10억 원을 투입.

## 1.4. 친환경농업과

-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전국 주도
  - 친환경농업 유기인증 확대 등 질적 성장을 통한 순위 선점(전국 3위)
  - 인증실적 : ('15) 2,838농가, 4,201ha → ('16) 2,892농가, 4,283ha(1.9% ↑)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수립('16~'20)
  - \* '2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 4.1% → 8%, 63개 사업/ 6,194억 원 투자
  
- 쌀 산업 안정화
  - 2018년 강원도는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정부매입 확대 및 도내 29개 농협·민간 등 일반 매입업체의 매입량 확대로 쌀값 안정을 도모.
  - 또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쌀 특판전, 대량소비처 발굴, 식자재 납품업체 홍보 강화 등으로 쌀 인지도 향상에 기여.
  
- 주산지 작목 부가가치 제고
  - 강원도는 밭 면적이 많고 감자재배에 적합한 고랭지지역이 많아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이 전국 면적의 95%이상을 점유.
  - 감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10,7억 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700ha(2억 원)

## 1.5. 동물방역과

- 선진동물방역·보호 실현 및 안전한 축산물위생 환경 구축
  - 동물방역 분야 도 자체 사업으로는 영세양축 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 방역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2,269백만 원을 투입.
  - 반려동물 보호사업 육성을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608만 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인구증가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
  
-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AI·FMD·ASF) 대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야생조류에서 H5·H7형 항원·항체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매주 전



- 화·임상예찰을 실시.
- 방역이 취약한 농가와 산란계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355농가 115명) 하여 예찰·소독·입식출하·기록관리 등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차단방역에 철저를 가함과 동시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
- 생산 단계별 위생·안전관리(HACCP) 체계 구축.
  - 축산물 HACCP 신규 인증과 유지를 위하여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농장 31호에 대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지원하고 축산농장, 축산물 작업장 등 53개소에 대하여는 HACCP 관련 위생 시설·장비 등을 지원.
  - 특히, 전국 최초로 브랜드 HACCP 인증을 위하여 ‘홍천 사랑말 한우’ 소속 16개 농가에 대하여 단체 컨설팅을 진행.

## 2.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농업정책 방향

-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립할 수 있음.
  -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고려하되, Post-농업협상의 시기를 알 수 없고 미래의 강원도 농업 현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지역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새로운 정책은 국제규범과의 합치성이 높아야 하며, 따라서 허용보조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필요가 있음.
  - Post-농업협상의 파급효과는 장기적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모성, 일회성 보조보다는 교육 등 소프트 인프라를 확대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이 적절함.
  - 농업생산 투입재 보조와 같은 생산 보조 보다는 공공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구매 보조의 성격을 갖는 것이 적절함. (생산의 증대는 가격의 하락을 야기하지만, 소비의 증대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 특히 로컬푸드의 일상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공급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소득보전의 성격을 갖더라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라는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함. 또한 농산물검사사업, 방역 및 방제사업, 연구사업은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므로, 정책 설계 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파급영향 분석에서 강원도 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감자, 들깨, 참깨, 고추 등으로 대부분 타 작물에 비해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품목임. 따라서 해당 작물들의 재배 및 수확에 있어서 노동력을 줄이는 기계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그림 5-1.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농업정책 기준



- 기존에도 강원도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강원도 농업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목표와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향후 강원도 시군 특성에 부합하는 선택형 마을/지역단위 공익프로그램에 대한 선제적 준비 필요함.
  - 선진국의 경우 지자체의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환경 및 교육단체 등이 합동으로 지역 내 농업환경 및 경관 특성에 적합한 공익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국고를 지원 받고, 이를 활용한 국민 공감형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앞으로 면적단위 공익직불제에 더하여 이러한 지역 선택형 공익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므로 강원도 내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한 공모형 공익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감으로서 강원지역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 지역산 농산물을 기능성 식품, 천연물 화장품, 생물의약품, 바이오 친환경 소재로 활용되도록 하는 기반 구축을 통해 강원 농업의 농생명산업으로서의 외연확대와 고부가가치화 전환 필요함
  - 농산물의 수요확대 차원에서 단지 식용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비식용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수요기반 확대 노력이 필요함.
  
- 기본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커지고 있음.
  - 중앙 정부도 임산부 꾸러미 사업, 고령 친화 꾸러미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강원도 내 취약 계층에 대한 꾸러미 사업 등 구매보조를 통한 수요 증진 사업을 신설 및 확대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3. 신규 농업정책 발굴 (상향식 지속가능 농업농촌지원 정책)

#### 3.1. 정책 개요

##### ○ 사업목적

- 시·군별 농업농촌 발전 계획을 통한 강원도 농가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경영개선
- 시·군별 농식품 생산, 유통, 가공, 서비스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강화 및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각종 지원으로 강원도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지원대상

- 수행기관 신청자격: 추진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강원도 내 시·군
  - \* 수행기관은 지역의 농식품 생산, 유통, 가공, 서비스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농업농촌 로드맵(『OO시(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함.
  - \* 본 사업은 시·군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임. 다만, 시·군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군이 담당 가능한 범위가 있고 시·군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범위가 있음. 따라서 시·군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은 시·군의 희망사항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최종적으로는 강원도에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지원내용

- 시·군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단계별 선택지원체계 마련
  - \* 기본역량 강화단계
  - \*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도약단계
  -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착단계
- 단계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메뉴를 설정하고 시·군별 제반 여건에 따라 시·군이 자율적 선택 지원

표 3-1. 지역농업농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지원메뉴

단계	사업메뉴	주요 지원 내용 (예시)
기본역량 강화	경영환경개선 지원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 전환, 신제품 도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	수매·비축 물량 확보, 적정면적 관리, 생산 감축 직불금
	공공 농업고용서비스 강화	도시 노동력의 농촌 공급을 촉진을 위한 중계와 비용지원
	온라인 유통시스템 구축	온라인 거래방식 시스템을 구축, 물류시설 강화,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수요 확대를 통한 채소 수급 여건 개선	가정 및 지역 내 국산 김치 등 채소 소비촉진 활동 강화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도약	산지-유통업체-시군 연계 판촉 활동	대형 수요처에서의 기획 판매 행사
	지역 밀착형 밀키트 공급	지역 농산물 원재료 상업용·취약계층 지원용 밀키트 개발 및 공급
	친환경 꾸러미 플랫폼 및 판촉 지원	친환경 꾸러미 플랫폼 구축 비용과 판촉행사비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착	경영안정 지원 정책 강화	급격한 시장위험 발생 대응 농가 경영 지원 보험제도나 직접지원제도 도입
	환경농업프로그램과 자원절약프로그램 강화	시군별로 지역 및 품목 특색에 맞는 환경농업프로그램 및 자원절약 프로그램을 도입
	신 수출 시장 판로 개척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판로개척 비용 지원
	농식품 소비지원 바우처 사업 확대	지역 농식품소비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도입 및 강화

- 기본역량 강화단계에서는 경영환경개선 지원,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 농업고용서비스 강화, 온라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생산, 경영, 유통의 기본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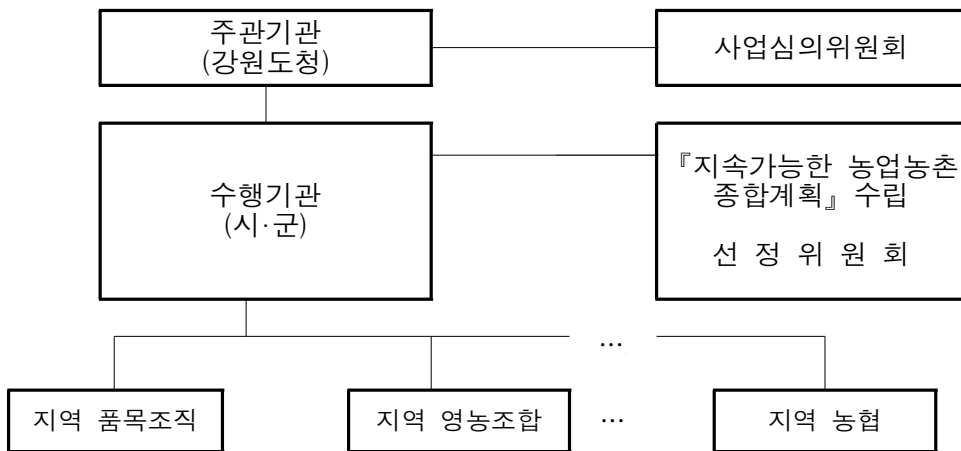
\* 생산역량과 시장경쟁력 강화, 생산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도약단계에서는 산지-유통업체-시군 연계 판촉 활동, 지역 밀착형 밀키트 공급, 친환경 꾸러미 플랫폼 및 판촉 지원 등 수요처의 적극적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 주안점을 둬.

\*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공공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착단계에서는 경영안정 지원 정책 강화, 환경농업프로그램과 자원절약프로그램 강화, 신 수출 시장 판로 개척 지원, 농식품 소비 지원 바우처 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농업의 경영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춤.

○ 사업추진 체계



- 주관기관인 강원도의 관할 하에 수행기관인 시·군을 통해 지역 농식품 생산 농가, 업체 및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 본 사업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시·군을 통한 간접지원 형태로서 지역의 현안과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렴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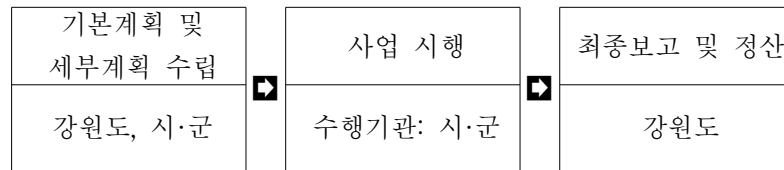
**2.2.2. 사업개요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강원도와 시·군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종합계획』)을 수립
  -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종합계획』 수립에 지역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지역 농민조직 등이 참여 시 가점
- 사업 수행기관인 시·군은 사업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업무 담당자 수와 예산 규모 등을 고려, 종합계획 평가 시 반영 : 인력 확보 수준이 높은 경우 종합계획에 가점

- 자체 사업 집행이 어려운 경우 시·군은 강원도에 사업 수행을 위임하고 강원도는 강원도 전체 종합계획 하에 해당 시·군 농업농촌 지원을 포함시켜 사업을 수행함. 다만, 해당 시·군은 차기년도에 예산상의 감축이 있음.
- 사업 수행기관인 지자체는 사업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수행 이후 결과를 사업 주관기관에 보고



○ 지원메뉴 선택 및 이행단계

- 각 시·군은 지역품목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 중 자율적으로 사업메뉴를 선택함.
- 주관기관과 수행기관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함.
- 사업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사후관리단계

- 강원도는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내·외부 평가 위원회를 소집해 연 3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강원도는 지원사업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수행기관(시·군)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강원도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감점 부여
- 강원도와 시·군은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 3.2. 세부 정책 목록(예시)

- 시·군별 농업농촌 발전 계획에서의 단계별 지원 메뉴는 아래 정책들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 단, 시·군별 농업농촌 발전 계획을 통한 농업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경우 강원도 차원에서 농업농촌 로드맵(『포스트 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아래 정책들을 포함하여 구성가능함.

### 3.2.1. 생산 및 경영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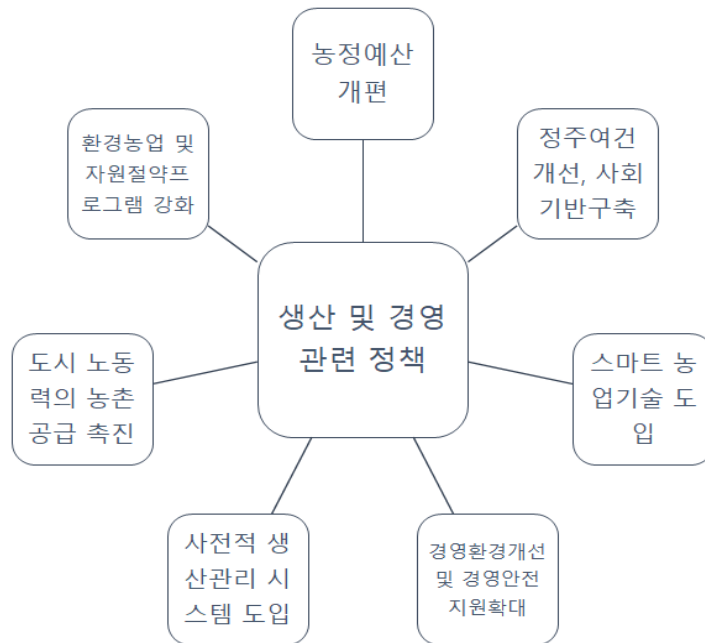
- 농업인 소득기반 보장을 위한 농정 예산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민, 농민단체, 농촌관광주체, 축산농가 등 지원주체별로 예산을 통합하고, 하우스·저장고 등 시설별, 농작물·방역대상 등 대상개체별로도 예산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성과 미흡사업에 대하여서는 폐지 또는 조정하고 농업인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쉼터, 정서적 안정, 공동체의식 강화 등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기반 등 정주여건 개선과 자생적 경제시스템 등 사회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육성을 확대하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도 확산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등 농업문제 해소를 위한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적용이 필요함.
  - 임대형 스마트팜 중심 도내 스마트팜 보급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 설립, 청년 정착하우스 조성, 스마트 교육·실증팜 조성, 강원특화 스마트 R&D 등 관련 정책 지원이 필요함.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 전환, 신제품 도입 및 시설 현대화 등에 대하여 경영환경개선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시설 원예농가 어려움 및 밀집사육에 따른 생활·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 지원이 필요함.
  -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반확충으로 가격·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확대, 시장다변화 등으로 도내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장경쟁력 감소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생산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품목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새로운 전략 품목으로의 생산 전환이나 수출특화 품종을 도입할 경우 고정금액의 구조조정직불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생산 시설의 현대화로 시장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저금리의 융자 지원이 필요함.
- 배추와 같이 고랭지형 엽근채소의 생산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수매·비축 물량 확보와 적정면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 생산 감축 시에는 경관 보존 활동, 수해경감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하여 농가가 참여하여 직불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함께 융합하여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들깨, 고추, 감자와 같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에 대하여서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는 도시 노동력의 농촌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 시군별 고용중개센터 등 일자리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공공 농업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유희인력 농촌일자리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버스비, 중식대 등 지원과 같이 도시 노동력의 농촌 공급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경영안정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현재는 생산액 또는 투자 관련 금융지원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있으나, 급격한 소비 변동과 같이 생산과 무관한 외부 충격에 의한 시장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이 미흡함. 급격한 시장위험 발생에 대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나 직접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규모 용수원 확보와 더불어 자동 급수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의 우수한 경관 유지 및 보전을 위하여 농업·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농업프로그램과 자원절약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형 직불제가 있으나, 시군별로 지역 및 품목 특색에 맞는 환경농업프로그램 및 자원절약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강원도의 경관자원을 보전하며 친환경적 농업생산을 유도하고 농가경영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환경문제로 기피되는 축사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독·사양·환기·가축상태 등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제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축산농가 컨설팅 확대 및 HACCP 조기 인증 유도, 시설·장비 등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림 5-2.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생산 및 경영 관련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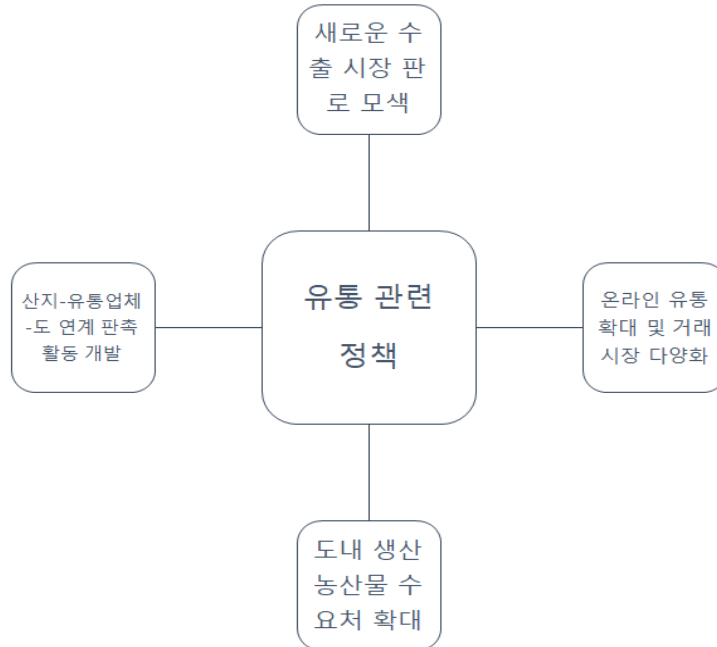
### 3.2.2. 유통 관련 정책

- 강원도 농산물의 국내 소비 증진을 위해 산지-유통업체-도(또는 시군)가 연계한 판촉 활동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수요처에서의 기획 판매 행사를 산지-유통업

체-도(또는 시군)가 연계하여 적극 활용.

- 수입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요처 확대를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함.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HMR·밀키트 공급에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한 제조가공시설 확충이 필요함.
  -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및 공공급식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공급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내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시·군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규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도내산 농산물의 군납 비율을 높이는데 지원이 필요함.
  
- 기존의 도매시장 중심의 오프라인 유통 방식에서 온라인 유통을 확대하고 거래시장을 다양하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소비패턴 변화에 맞는 농산물 디지털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도내 농산물 온-오프라인 직거래 판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또는 품목별로 온라인 거래방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거래처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온라인 거래를 위해서는 운송차량, 저장시설, 운송용기, 운송기기 등 시군별 물류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새벽배송·센트럴키친 원물 공급(B2B)과 소비자 선택형 꾸러미사업(B2C)을 위한 통합 물류센터 설립이 필요함.
  
- 수출대상 시장 동향과 수요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수출여건 변화에 맞는 수출가능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홍콩, 일본 외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의 판로 모색에 대한 지원 마련이 필요함.

그림 5-3.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유통 관련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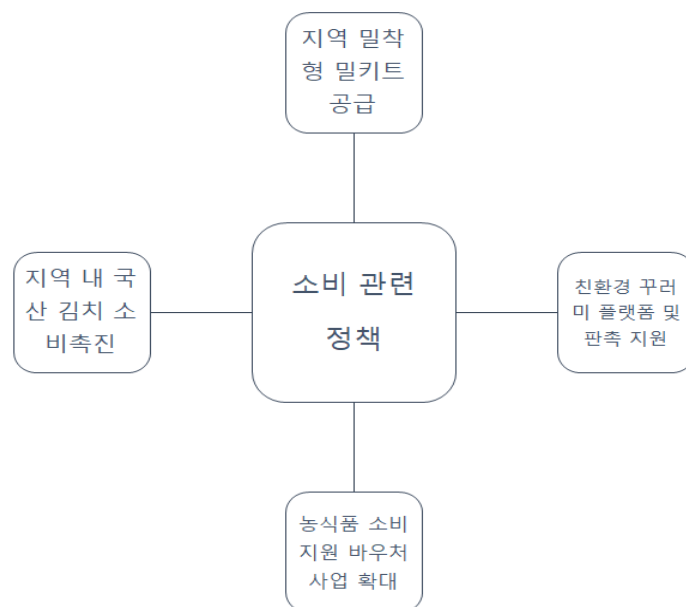
### 3.2.3. 소비 관련 정책

- 지역 밀착형 밀키트 공급 추진
  -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음식점과 배달 대행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상업용·취약계층 지원용 밀키트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및 홍보 및 판촉 일부를 도(또는 시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꾸러미 플랫폼 및 판촉 지원
  - 소비자가 온라인 매장에서 꾸러미를 주문하면 지역별 친환경영농조합이나 농협 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한 뒤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지역별 친환경영농조합이나 농협 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면, 해당 업체에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
  -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홍보배너, 팸플렛, 현수막, 포장개발, 시식행사

등 판촉행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식품 접근수준(food accessibility)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농식품 소비지원 바우처 사업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취약 계층에 대한 농식품 섭취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취약계층 농식품 소비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 계층 뿐만 아니라, 영유아, 노인, 임산부, 구매인프라 열악지원 거주민 등에 대하여 시군별로 농식품 소비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도입.
  
- 김치 수요 확대를 통한 채소 수급 여건 개선 정책 추진
  - 그동안 가정 내 김치 소비가 감소하고 외식업에서 수입산 김치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배추 농가와 김치 제조업체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왔음.
  - 지역별 김치의 특징을 되살려 브랜드화하고 가정 및 지역 내 국산 김치 소비촉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5-4. Post-농업협상 대응 강원도 소비 관련 정책 제안



## 참고 문헌

---

- 박민선, 허남혁, 강마야, 이관률. 2014.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서진교, 박지현, 김민성. 2019. 「최근 WTO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상현, 안수정. 2016. 「수출경쟁분야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와 시사점」. KREI 이슈리포트, 국  
농촌경제연구원.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농림축산식품부. <<http://mafra.go.kr/mafra/1351/subview.do>>
- WTO 통보자료.  
G/AG/N/KOR/7, 8, 10, 14, 15, 16, 18, 19, 20, 24, 24C1, 25, 26, 29, 30, 31, 32, 36, 37,  
37C1, 42, 43, 43C1, 44, 52, 53, 58  
WT/GC/W/757/Rev.1